

#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2266
- 발 의 자 : 김태수 의원(찬성자 10명)
- 발 의 일 : 2017년 11월 13일
- 회 부 일 : 2017년 11월 14일

###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결산, 자금관리, 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수입, 지출, 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회계법」으로 따로 정하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명의 띄어쓰기를 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을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으로 수정함(안 제4조)
- 나. “행정자치부”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함(안 제4조 및 제6조제1항)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회계법」 , 「정부조직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다. 기 타 : 입법예고(2017. 11. 17 ~ 11. 24) 결과 : 의견없음.

##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과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중앙부처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반영(안 제4조)

- 안 제4조는 「지방재정법」 중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수입·지출·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sup>1)</sup>이 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본원칙) 시 및 산하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해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행정안전부----- ----- -----.

1) 「지방회계법」 법률 제14197호, 2016.5.29., 제정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21호, 2016.11.29., 제정

### 〈법령 개정 사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p>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사항)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이영에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수입·지출 그 밖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그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예산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작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불구하고 <u>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u></p> <p>&lt;신설 2007.6.28, 2008.2.29, 2013.3.23, 2014.11.19&gt;</p>	<p><b>제144조 삭제</b> <b>&lt;2016.11.29&gt;</b></p>	<p>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사항)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u>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u></p> <p>②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p>

#### 나.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 반영(안 제6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u>행정자치부</u>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p>	<p>제6조(집행기준) ① ----- ----- <u>행정안전부</u> ----- ----- -----.</p>

- 안 제6조는 「정부조직법」 2)개정으로 상위법의 주관 부처의 명칭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정부조직법 개정 사유 :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정부조직법
<p><b>제34조(행정안전부)</b>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lt;2017.7.26.&gt;</p> <p>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p>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상위법령과 조례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쟁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재무국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신속히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법체계의 명확성과 조례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 김태한
입법조사관 : 최석훈

2) 정부조직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일부개정]